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34호 2015. 7. 22. (수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5-48호 북천코스모스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승인 2
- 하동군 고시 제2015-50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94차) 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5-600호 지적재조사 홍보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5
- 하동군 공고 제2015-617호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 현황 공고..... 7
- 하동군 공고 제2015-629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고· 8
- 하동군 공고 제2015-645호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3
- 하동군 공고 제2015-646호 섬진교 차량 통행 일시제한 공고..... 20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434 호

하동군 고시 제 2015 - 48호

북천코스모스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규정에 의하여 북천코스모스권역 종합정비사업 기본 계획을 확정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목 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2. 사 업 명 : 북천코스모스권역 종합정비사업
3. 위 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옥정리, 사평리, 방화리 일원
4. 사업시행면적 : 1,650ha
5. 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커뮤니티센터 A=489㎡ 광장 600㎡, 주차장 350㎡
 - 북천역갤러리 : 4개소(원곡, 하남, 황보, 개인)
 - 이명산등산로정비 : 9.04km
 - 뚝방길정비 L=680m
 - 지역경관개선
 - 코스모스 경관테마사업 : 보행로정비 620m
 - 코스모스 공동예술사업 1식
 - 경관수목식재 147주
 - 지역소득증대
 - 한우판매장 1동(120㎡)
 - 지역역량강화
 - 교육 : 1식
 - 컨설팅 : 1식
 - 마을경영지원 : 1식
 - 부대공(기본계획, 시행계획, 공사감리등)
6.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비 4,900, 도비 630, 군비 1,470)
7. 사업기간 : 2012년 ~ 2016년(5개년)
8.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기본계획서는 하동군 건설교통과 (☎055-880-2513)와 한국농어촌공사 하동남해지사(☎055-880-5141)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동군 고시 제2015-50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94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7. 1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101-48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1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7. 1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 제 434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277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배안골길 101-48	20150710	20070618	산 허리의 바위들의 배치가 배의 내부와 비슷하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산 255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124-32	20150710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 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 통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 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문암리 63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298-11	20150710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 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647-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93	20150710	2007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588-4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달구지길 78	20150710	20070618	옛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서리 1225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중서길 60-24	20150710	20070618	중서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11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한옥정길 103-14	20150710	20070618	두전 서쪽에 있는 한옥정이라 는 지명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266-8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21	20150710	2008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818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상촌길 68-109	20150710	20080402	청룡과 상촌을 합성하여 청룡 상촌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146-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57	20150710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두양리 32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600	2015071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73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단로 1094-26	20150710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단성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방화리 943-2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 1874-7	20150710	20090710	경남의 서부지역을 잇는 도로	

하동군 공고 제 2015 - 600 호

지적재조사 홍보지구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하 동 군 수

1. 사 업 명 : 하동군 횡천면 홍보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위치 :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656번지 일원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사업시행자 : 하동군수
5. 사업기간 : 2016. 1. ~ 2017. 6.
6.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 가. 관계서류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 나. 열람장소 : 하동군청 민원과

7.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하동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055-880-2083~20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방 문 : 하동군청 민원과
- 나. 전 화 : 055-880-2083~2084
- 다. 팩 스 : 055-880-2078
- 라. 우 편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공 보

(6) 제 434 호

■ 지적재조사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	------

① 사업명			
② 사업지구위치			
③ 시행자			
④ 의견제출자	성명 및 기관·단체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⑤ 의견내용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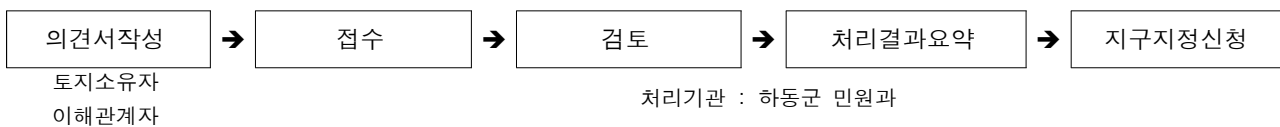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처 리 절 차



하동군 공고 제2015-617호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하동군이 2014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2014년도 하동군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① 총 건수	② 예고 대상				③ 예고 매체 (중복 표기)				④ 예고 기간	
	고시	훈령	예규	기타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기타	20일 이상	20일 미만
115	97	-	-	18	53	113	9	73	106	9

<작성 방법>

- ① 총 건수는 2014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 고시 :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 훈령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 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예규 :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 기타 :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감안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 ③ 예고매체 :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 ④ 예고기간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

2015. 7. 7.

하 동 군 수

하 동 군 공 보

(8) 제 434 호

하동군 공고 제2015-629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3. 주요 내용 :
 - 가. 제명변경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 나. 목적과 용어의 뜻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리(안 제1조 및 제2조)
 - 다. 가축사육제한 지역·대상 및 예외 규정,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3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5일까지 하동군(환경보호과, 전화880-2573, FAX 880-2569, jihasoo@korea.kr)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1부.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한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지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으며,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적법하게 가축사육을 하는 경우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부터 제한지역에 건축된 무허가 축사가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양성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사를 개축 또는 기존 시설의 20 퍼센트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하 동 군 공 보

(10) 제 434 호

④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축의 배설물 등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
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축사의 청결유지
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 이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양성화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지역 (제3조 제1항 관련)

1. 주거밀집지역

제한지역	구 분	마리수	거리
주거밀집지역	소·말·양(염소 등 산양 포함)·사슴	400마리 미만	50m
		400마리 이상	70m
	젖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개	1,000마리 미만	400m
		1,000마리 ~ 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메추리	20,000마리 미만	250m
		20,000 ~ 50,000마리	450m
		50,000마리 이상	650m

(비 고)

1. “주거 밀집지역”은 가구간의 거리가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를 기준으로 5가구 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을 기준으로 하며, 「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 수로 산정하지 않는다(전기, 수도시설 기준)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마리 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따른 축종별 마리당 축사면적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한다.
4. “거리”는 가구로부터 축사예정지까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2. 수질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 련 법	내 용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수변구역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공고 제2015-645호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 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
 -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
 - 소규모 식품제조공을 지원·가공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등,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식품제조·가공 관련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완화 및 편의도모
3. 주요내용
 -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정의(안 제2조)
 -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계획 수립(안 제5조)
 -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6조)
 - 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위생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10조)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하동군(소득지원과, 전화 880-2842, FAX 880-2719)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별표 포함)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식품가공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나. 165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
 - 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이하“생산·판매 등”이라 한다)를 주된 일로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434 호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
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목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 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 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
- ③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에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회) 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하동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3. 식품의 안전관리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제7조와 관련)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나.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여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의 제1호사목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하동군 공고 제2015-646호

섬진교 차량 통행 일시제한 공고

제1회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행사의 일원으로 하동군과 광양시의 화합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영호남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 개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량 통행 일시제한을 공고합니다.

2015. 7. 15.

하 동 군 수

1. 통행제한 구간 : 섬진교

2. 통행제한 기간 : 2015. 7. 25.(토) 17:00~17:30

※ 행사 상황에 따라 제한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3. 통행제한 방법 : 차량 전면 통행 금지

※ 행사 상황에 따라 1개 차선 차량 통행이 가능할 수 있음

4. 통행제한 사유 : 영호남 화합의 줄다리기 행사 개최에 따른 통행 일시제한